#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85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김민철・오영환・김철민

임오경 · 한병도 · 민형배

신정훈 · 황운하 · 홍성국

박성준 • 진선미 • 민홍철

전혜숙 · 이해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도와 같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이런 곳에 자전거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자도 급증추세에 있는데, 특히,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이용한 후에 보도 등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및 도시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주변의 일정 공간에 시장(市長) 등이 개인형이 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 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중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 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2.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나 주차를 허용한 경우
- 3.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 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 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 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 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 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 지하는 장소의 특례)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2 조 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정

아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 주 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2.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경우
- 3.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 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 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경우